

2023도10286 의료법위반 사건

소부 공개변론 진행 보도자료

대법원 공보연구관실(02-3480-1895)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4. 10. 8.(화) 14:00 제1호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간호사의 무면허의료행위 여부가 문제된 2023도10286 의료법위반 사건에 관한 공개변론을 진행하기로 하였음

이번 공개변론에서는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전문가들이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청취하는 절차도 진행할 예정임

전원합의체 사건이 아닌 소부 사건으로는 네 번째로 시행되는 공개변론 사건으로 2022. 3. 27. 소부 공개변론을 진행한 2019다229202, 2021다232928 사건 이후 2년 6개월 만에 공개변론이 진행되는 것임

대법원은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사회적 영향이 큰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함으로써 대법원의 정책법원으로서의 기능에 부응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임

- 아 래 -

- 피고인은 종합병원 기타 의료기관의 설립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임
-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
- 골수 검사를 취한 골막 천자는 바늘을 이용해 골막을 뚫고 골수를 흡인하거나 조직을 생검하는 의료행위임
- 피고인의 사용인인 의사들이 소속 간호사들로 하여금 골수 검사에 필요한 골수 검체를 채취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됨

1. 공소사실[대법원 2023도10286 의료법위반(주심 대법관 오경미)]

- ▣ 피고인은 종합병원 기타 의료기관의 설립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임
- ▣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
- ▣ 골수 검사를 위한 골막 천자는 바늘을 이용해 골막을 뚫고 골수를 흡인하거나 조직을 생검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서 의사만이 할 수 있음
- ▣ 그런데도 피고인의 사용인인 의사들은 소속 간호사들로 하여금 골수 검사에 필요한 골수 검체를 채취하게 함
- ▣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들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함

2. 소송의 경과

- ▣ 제1심 ➡ 무죄
 - 골수 검사를 위한 골막 천자는 '의사가 직접 의료행위를 하여야만 하고, 종양전문간호사 자격을 가진 간호사들이 의사의 지시나 위임 아래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함
- ▣ 원심 ➡ 유죄
 - 의사의 현장 입회 여부를 불문하고 간호사가 골수 검사를 위한 골막 천자를 직접 수행한다면 진료보조가 아닌 진료행위 자체에 해당하므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함

3. 쟁점

가. 의료행위인 골막 천자의 법적 성격

- ▣ 의사는 간호사에게 진료보조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할 수는 있으나,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요하여 반드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 자체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할 수는 없음
- ▣ 골막 천자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절대적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면, 간호사의 골막 천자의 시행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데, 골막 천자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절대적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수 있음
 - 골막 천자의 구체적인 시행 방법
 - 골막 천자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술
 - 골막 천자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및 합병증, 연구보고
 - 관련 전문학회의 의견
 - 골막 천자의 시행자에 대한 실제 임상 현황
 - 환자들의 만족도
- ▣ 만약 골막 천자가 절대적 의료행위가 아닌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에도 의사의 적절한 지시·감독이 없었다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종양전문간호사의 골막 천자 시행 시 요구되는 의사의 지도·감독 정도가 쟁점이 되는데, 이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수 있음
 - 의사가 간호사의 골막 천자 시행 현장에 입회하여 지도·감독하는 경우와 일반적인 지도·감독을 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지도의 차이점 및 각 지도·감독방법에 따른 위험성의 정도
 - 성인/소아 환자의 차이점
 - 종양전문간호사의 골막 천자와 관련한 지식, 기술 정도

나. 전문간호사의 진료보조행위의 업무 범위

- ▣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2018. 3. 27. 법률 제15540호로 신설된 의료법 제78조 제4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처음 규정되었고, 2022. 4. 19.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신설로 입법화되었는데,

전문간호사의 진료보조와 관련된 업무로서 '처치·주사 등 진료에 필요한 업무 중 의사 등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를 포함하고 있음

- 이 사건에서는 종양전문간호사가 골수 검사를 위한 골막 천자를 하였음
- 일반간호사와 전문간호사의 진료보조행위의 업무 범위와 관련하여, 의료법상 일반간호사의 '진료보조행위'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상 '진료에 필요한 업무의 의료행위'가 동일한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전문간호사가 자격을 인정받은 분야에서 일반간호사의 진료보조행위 이상의 진료보조행위를 시행하여 그 범위에 차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됨

다. 간호법 제정이 이 사건에 미칠 영향

- 2024. 9. 20. 제정되어 2025. 6. 21. 시행 예정인 간호법에서는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의 범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향후 법률이 시행되고, 보건복지부령에서 진료지원업무의 범위를 정할 경우에는 이 사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쟁점이 됨

4. 공개변론 진행계획

가. 변론진행 주체

- 형사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

나. 일시, 장소

- 2024. 10. 8.(화) 14:00 제1호 법정

다. 참고인

- 검찰 측 참고인
 - 정재현(내과전문의, 해운대부민병원 소화기센터 진료부장)
 - 조병욱(소아청소년과전문의, 신천연합병원 소아청소년과 진료과장)

▣ 피고인 측 참고인

- 윤성수(내과전문의, 서울대학교 의대 내과학교실 교수)
- 배성화(내과전문의,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
- 최수정(전문간호사, 성균관대학교 임상간호대학원 교수)

라. 진행순서와 시간계획¹⁾

순서	시간	주요내용
개정	14:00~14:05(5분)	재판장의 당사자 출석 확인, 사건개요 등 설명
쟁점에 관한 변론	14:05~14:15(10분)	검사 변론
	14:15~14:25(10분)	피고인 변론
참고인신문	14:25~14:35(10분)	검사 측 참고인 정재현
	14:35~14:45(10분)	검사 측 참고인 조병욱
	14:45~14:55(10분)	피고인 측 참고인 윤성수
	14:55~15:05(10분)	피고인 측 참고인 배성화
	15:05~15:15(10분)	피고인 측 참고인 최수정
재판부 질의 및 응답	15:15~15:45(30분)	검사/피고인/참고인에 대한 재판부 질의 및 응답
재판부 논의 정리	15:45~15:49(4분)	재판부 논의 정리
최종변론	15:49~15:54(5분)	검사 최종변론
	15:54~15:59(5분)	피고인 최종 변론
폐정	15:59~16:00(1분)	재판부 폐정선언

▣ 유튜브 등을 통한 실시간 중계 및 녹화 영상 게시는 실시하지 않음

▣ 소법정 내 좌석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방청 가능(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시

1) 실제 재판에서의 참고인신문 순서 및 시간 배정과 다를 수 있음

된 방청안내문 참조)

- ▣ 공개변론 직후 변론내용을 간략 정리한 2차 보도자료 배포 예정